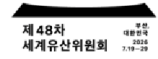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레미콘 품질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거나, 제60조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장에서 반입되는 레미콘의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아닌 레미콘 공장의 직원이 실시하여, 형식적인 품질시험으로 인한 양질의 품질확보 곤란, 레미콘 공장의 부담 가중 및 객관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각 발주기관 및 협회에서는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사에서 실시 하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기관(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는 건설 현장 점검 시 레미콘 품질시험을 적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법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및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건설사업자, 주택 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벌점 1점 부과
- 주요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1~3 점

. 끝 .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안전과장), 국토안전관리원장,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충청북도청, 울산광역시청, 충청남도청, 경기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경상북도청, 경상남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공항공사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충공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주무관 송정근 시설사무관 신동기 건설안전과장 전결 2026. 7. 23. 이창훈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5355 (2026. 7. 23.)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580 팩스번호 044-201-5553 / narba@molit.go.kr / 비공개(5)

K-헤리티지 ,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